

수원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20가단57121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명

담당변호사 황정오

피 고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C

2.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을

담당변호사 김희천, 차영애

변 론 종 결 2021. 5. 4.

판 결 선 고 2021. 6. 2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3,158,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D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26. 체결한 매매계약을 33,158,3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3,158,3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년경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LED등 기구 부품인 엘지이노텍 LED PKG 등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 물품을 납품하여 왔다. 2020. 7. 31. 기준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물품대금 채무는 33,158,370원이다.

나. 피고 B은 2020. 8. 26.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99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8. 31. 피고 D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2021. 3. 3.자 회신),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33,158,3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D에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피고 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한편 피고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33,158,3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은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33,158,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20. 7. 31. 기준 피고 B에 대하여 33,158,37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D에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 D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D은, 자신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물로 나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수하였을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990,000,000원으로 정하면서 그 중 2,940,000,000원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와 동시에, 나머지

50,000,000원은 2020. 10. 30.까지 위 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D은 피고 B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20. 8. 31. 2,940,000,000원, 2020. 11. 2. 50,000,000원 합계 2,990,000,000원 전액을 지급한 사실, 그리고 피고 D은 2020. 8. 3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E(F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게 중개수수료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진정하게 매수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선우

[별지목록]

부동산목록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 1361.1㎡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기타지붕 4층공장

1층 615.17㎡

2층 187.25㎡

3층 398.73㎡

4층 383.83㎡

끝.